

의안번호	2205214
의 퇴 인	이용우 의원
회 답 일	2024.12.16.
추 계 번호	24B478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2항~제6항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는 “도급인”이라 한다)는 도급계약서의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는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그 사업을 도급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는 “수급인”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비용은 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기관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의 도급인	
		도급인은 제2항에 따라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에 수급인이 전월(前月)[임금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에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도급인에게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됨(제4항)	의무규정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이하 이 조에서 “인건비용예치”라 한다)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2	안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7항~제8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급인·수급인·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제7항)	의무규정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건비용의 구분지급, 인건비용의 지급내역 확인 방법, 인건비용예치의 방법·절차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8항)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2항~제6항	—	• 미대상 – 개정안은 국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도급할 경우 임금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하고, 도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의 전월(前月)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며,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임 – 개정안은 하도급 전반에 임금구분지급을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직상 수급인·도급인 등의 의무사항에 대한 규정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7항~제8항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본문 참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급인·수급인·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정해져야 하나, 개정안은 이를 고용노동부령

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또한 업종별 하도급 계약 관행 및 계약 방식이 다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시스템의 규모와 이에 대한 소요예산 산출이 곤란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¹⁾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임금구분지급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기존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시스템 고도화 비용 및 유지보수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는 시스템 개발 비용 등의 추계가 곤란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1)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